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서영석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4705

발의연월일: 2022. 2. 8.

발 의 자:서영석·강병원·강선우

김수흥 • 남인순 • 문진석

오영환 • 이용빈 • 이정문

조승래 · 최종윤 · 허종식
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10대 청소년의 경우 비대면 활동에 익숙하여 다크웹, 텔레그램을 통해 대마 계열의 마약류를 쉽게 접할 수 있음에도, 구매로 이어지는 데까지 제재할 수 있는 장치가 없는 상태임. 2021년 1월부터 10월까지 검거된 대마사범 중 10대 청소년의 수는 54명으로 이는 2016년 대비 3배 이상 증가한 수치임.

10대 청소년의 마약사범 수가 매해 증가하는 추세이고, 청소년기의 대마 흡입은 뇌의 성장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, 향후 또 다른 중독이나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므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대마 를 수수, 제공하는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.

이에 미성년자에게 대마를 수수·제공하거나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게 한 자에 대해 마약류 관리법 제58조의 2를 신설하여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현행 규정을 3년

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상향하고, 상습적으로 죄를 범한 자는 5 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해 청소년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(안 제58조의2 신설 등).

법률 제 호

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58조의2(벌칙) ① 제3조제10호 또는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미성년 자에게 대마를 수수·제공하거나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 연 또는 섭취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.

- ②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.
-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. 제59조제1항제8호를 삭제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제58조의2(벌칙) ① 제3조제10호
	또는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
	<u>미성년자에게 대마를 수수·제</u>
	공하거나 대마 또는 대마초 종
	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
	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정
	역에 처한다.
	②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
	범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
	역에 처한다.
	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
	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.
제59조(벌칙) ① 다음 각 호의 어	제59조(벌칙) ①
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	
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.	
1. ~ 7. (생 략)	1. ~ 7. (현행과 같음)
8. 제3조제10호 또는 제4조제1	<u><</u> 삭 제>
항을 위반하여 미성년자에게	
대마를 수수·제공하거나 대마	
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	
흡연 또는 섭취하게 한 자	
9. ~ 14. (생 략)	9. ~ 14. (현행과 같음)
② ~ ④ (생 략)	② ~ ④ (현행과 같음)